

2025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

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시행 지침(해양수산부)에 따라 본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 1. 8.

제주시장

1. 사업목적

-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,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

2. 사업 대상자 자격 및 선정제외 대상

○ 사업자 자격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,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 등)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
-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양식장

○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
- 최근 2년 이내(당해 사업연도 기준)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

3. 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
- 양식 전주기(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) 배합사료(EP,SEP)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
- ① 전주기 또는 생사료 혼용 : 넙치류, 볼락류, 돔류 등 그 외 배합사료 사용률 80% 미만 어종의 경우는 전주기 또는 혼용 사용 선택 가능
- ② 전주기 : 가자미 등 배합사료 사용률 80%이상 어종은 전주기만 선택 가능
-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,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(2시간) 이수 조건

○ 지급 대상 사료

-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
- 「사료관리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(EP : Extruded Pellet 및 SEP : Soft Extruded Pellet) 단, 분말사료 및 미립자(크럼블 등)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

○ 배합사료 최소품질기준

구분	최소품질기준	
	단백질(%)	지방(%)
넙치류	52% 이상	8% 이상
가자미류	50% 이상	
볼락류	45% 이상	
돔류	42% 이상	
기타 어류	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	

*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% 이상 포함되고,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,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

○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
- 지원조건(재원) : 국고 100%
- 지원한도(보조금 기준) : 어가(경영체) 당 최대 2.3억원 한도

* 사업량은 사업포기 발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조정 될 수 있음

4. 신청기간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5. 1. 8.(수) ~ 2025. 1. 31.(금)까지
- 신청절차 :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 직접 제출
- 구비서류

▶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

- ①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(배합사료)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- ② 양식업 면허·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
- ④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[별지 제2호 서식]
- ⑤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
- ⑥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 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⑦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⑧ (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) 지분 또는 행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
* 단,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로 같음

○ 지급단가

- (넙치·볼락·돔류) 전주기 사용시 10,360원, 혼용시 3,620원
- (가자미류) 전주기 사용시 10,360원, 혼용시 미지급
- (그 외 어종) ①배합사료 사용률 80% 이상 어종은 전주기 3,620원, 혼용시 미지급
②배합사료 사용률 80%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,360원, 혼용시 3,620원

<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>

(1포: 20kg)

구 분		신청 구분	1포 당 지급단가	
			곤충분***	
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		전주기	10,360원	11,390원
		혼용 (가자미류 제외)	3,626원	3,980원
기타 어류*	배합사료 사용률 80% 미만 어류**	전주기	10,360원	11,390원
		혼용	3,620원	3,980원
	배합사료 사용률 80% 이상 어류**	전주기	3,620원	3,980원

** (80% 미만 어류) 고등어, 농어류, 능성어, 민어, 방어류, 전갱이류, 쥐치류, 참다랑어
(80% 이상 어류) 송어류, 부세, 복어류, 연어류, 전어, 참조기

5. 사업자의 자격 박탈

-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불성실 작성,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,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, 허위로 작성한 자
- 부정하거나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
-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
- 사업 대상자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
 - 전주기 사용 어가 중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(분쇄기,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)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
 - * 다만, 냉동창고의 경우 ①배합사료 보관을 위한 일반창고 용도, ②생사료 예외 사용을 위한 보관용, ③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 기간 냉동고 사용할 경우에는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확인·감독을 받아야 함
 -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,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생사료를 사용할 수 있음

※ 예외적으로 생사료 사용 가능한 경우

- ① 저수온 특보(경보, 주의보)가 발령된 시·도의 관할 시·군·구는 해당 시·도 전체에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할 양식장에 한해 허용 가능
 - ② 어병 예방·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사용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(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)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·양성하는 경우
 - *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
 - ③ 그 외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, 다만 ②, ③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
- ➔ ①, ②, ③의 경우 생사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생사료 구입·사용·사용 후 보관량을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·군·구청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여부 판단

6.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

-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 수령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 - 다만, 제21조제1항 중 제1호(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)나 제2호(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)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
-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,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 - 부당이득금, 제재부가금,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
-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기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
- 사업 신청 당시 전주기 사용으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지급 받았으나 혼용으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함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(☎728-38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■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친환경수산물(배합사료)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 (대표자명)		양식장명 (법인명)	
	주소 (법인소재지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전자우편		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	
	입금계좌	(은행명)	(예금주)	(계좌번호)

인허가 및 양식현황	어업경영체 등록여부		[]등록(등록번호:) []그 외(「상법」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)						
	양식품종	면허·허가 번호	양식장소재지(어장소재지)				양식장 면허·허가 면적 (ha)	품종별 양식면적 (ha)	과거 지급 현 황 (횟수)
		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지번 (지선)			
합 계									

배합사료 사용계획	양식품종	연간 양식생산량(톤/년)	연간 배합사료 사용 계획량(톤/년)	사용 예정 제품명
	합 계			

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및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제주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식업면허·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 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- 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합니다)의 수산업·어촌 관련 용자·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 - 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·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,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 - 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·어촌 관련 용자·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, 선정 심사 및 공개, 보조금 등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 - 4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(이하 "등록정보"라 합니다)의 확인,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·점검·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, 신청·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- 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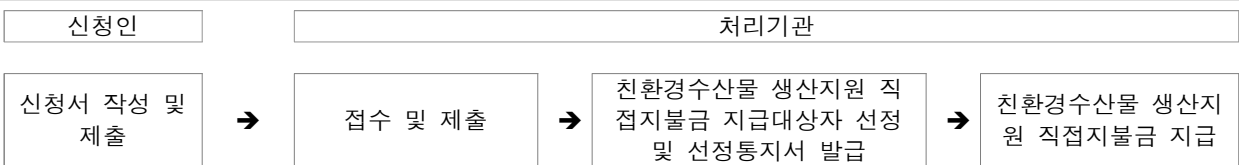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1.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2."신청인"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.
- 3."입금계좌"란에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.
- 4."인허가 및 양식현황"란 중 "어업경영체 등록여부"란에는 해당란에 √표시를 하며 등록된 경우 등록번호를 ()안에 적고, 그 외 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신청인이 받은 면허·허가 정보를 적습니다.
- 5."배합사료사용계획"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연간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, 사용 예정인 제품명(공급업체명을 같이 적습니다)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(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)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· 조회에 관한 사항

1.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 · 이용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,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, 보조금 등의 부정 · 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
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 등록정보), 주소 ·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 · 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■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집 ·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(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)

2. 제공 · 조회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 ·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
제공 ·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 등록정보), 주소 ·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 · 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■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공 ·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(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,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· 이용합니다)

[별지 제2호 서식]

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주기 <input type="checkbox"/> 혼용 * 선택 필수														
성 명											면허번호			
소유면적 (수조)	ha(m ²)										시설칸수 (수조수)	: m× m ()		
사육현황	어 종													
	입식년도													
	중 량(g)													
	미수(천미)													
금후입식 예상량	입식예정일													
	어 종													
	미수(천미)													
배합사료 사용계획 기간표시 (↔)	월별	1	2	3	4	5	6	7	8	9	10	11	12	
	품종별													
배합사료 투여계획	공급업체명													
	톤													
사육일지 작성여부 (기간)														
기타참고사항														

[별지 제3호]

동 의 서

- 사 업 명 : 2025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
- 양식장명 :
- 허가기간 :
- 주 소 :

1. 위임하는 자 정보			
성명		지분	
주민번호			
주소			
2. 위임받는 자 정보			
성명		지분	
주민번호			
주소			

동의사항

- 본인은 상기 양식장의 공동대표로서 2025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위임하는자 : (인)(※도장필)

위임받는자 : (인)(※도장필)

제주시장 귀하